

정책연구 2013-20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과제 개요	3
제2절 과제의 연구내용	4
제3절 과제의 연구방법	5
제2장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및 현황 분석	7
제1절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9
1.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활동의 개념	9
2. 안전문화활동의 분야 및 내용	13
제2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 16	
1. 안전문화활동을 위한 체계화 추진	16
2. 새정부의 안전문화활동을 위한 정책 추진	18
3. 안전문화활동 추진체계의 구성 및 활동 내용 22	
제3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개선 필요성	25
1. 안전문화 분야의 관리 실태	25
2. 안전문화 분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27
3.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 필요성	29
제3장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 관련 유사사례 분석 31	
제1절 사례분석의 필요성 및 대상	33
제2절 안전관리 분야의 유사기관	36

1. 한국재난안전기술원	36
2. 한국시설안전공단	36
제3절 타 분야의 유사기관	38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8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2
3. 한국콘텐츠진흥원	45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8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1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3
7. 한국인터넷진흥원	56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8
제4절 사례분석 정리 및 시사점	60
제4장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 방안 연구 ...	63
제1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65
제2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	72
제3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행·재정 지원 방안 ..	78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91



표 차례

<표 2-1> 안전관리대책 관련분야 및 주관기관	12
<표 2-2> 안전문화 주요 영역별 활동	13
<표 2-3> 정부의 분야별 안전관리 중점대상 21개 과제	20
<표 2-4> 시기별·계절별 재난·안전사고 유형 분석	21
<표 3-1> 진흥원 관련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별 기관 사례	34
<표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 현황(2013)	40
<표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내용에 따른 재정운영 현황(2013)	44
<표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개요	45
<표 3-5>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입과 지출(2013 회계연도 기준, 2800억)	48
<표 3-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수입지출 현황	57
<표 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재정지원 수입(계획)표 (2013년 예산 기준)	59
<표 3-8> 3개 주요 진흥원기관의 운영체계 비교 (2013년 기준)	60
<표 4-1> 2010년 연구보고서의 안전문화진흥원 조직도(안) ..	69
<표 4-2>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의 차이	75
<표 4-3> 원유철의원의 제정소요(안): 2011~2015년	80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 조직도	22
<그림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2013년 12월 현재)	39
<그림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입내역(2013년 예산서)	42
<그림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도	43
<그림 3-4>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체계	47
<그림 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49
<그림 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입지출 현황	50
<그림 3-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직도	52
<그림 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직체계	54
<그림 3-9>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직도	56
<그림 3-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직도	58
<그림 4-1> 2010년 연구보고서의 안전문화진흥원 운영사업 및 조직체계 제안	68
<그림 4-2> 2012년 보고서의 정부위원회 산하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설치(안)	70
<그림 4-3> 2012년 보고서의 국무총리 직속 '안전문화 진흥위원회' 설치(안)	71



제1장 서론

제1절 과제 개요

제2절 과제의 연구내용

제3절 과제의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 과제 개요

1. 추진배경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안전사고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아직 심각한 수준임
 - ※ 안전사고 사망자율('11년) : 국내 12.6%, OECD 평균 6.1%
 - 사례: 도시위험도(서울시 2010년 통계)로 본 생활안전사고 증가 실태
 - ※ 생활안전사고: 35,425건('08) → 43,629건('10)
 - ※ 119구조대 생활안전사고 구조현황: 24,416건('08) → 36,296건('10)
- 정부는 2013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8장에 ‘안전문화 진흥’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정부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통해서 향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2. 연구과제의 필요성

- 이미 새정부는 2013년 5월 30일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를 총망라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을 출범
 - 개정된 법률을 통해서 안전행정부는 재난관리와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안전연구 등에 관한 총괄부처의 지위를 부여받고

- 정부의 전국 안전문화의 지속적 확산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발효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이하에서는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범정부적 안전문화 정책 추진체계 및 추진기구 등에 관한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음
- 안전문화운동 추진주체의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이 급선무임
 - 이에 범국가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안전을 위한 제반활동(안전문화활동 또는 안전문화운동)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민간중심 기구로서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음

제2절 | 과제의 연구내용

1. 안전문화 확산방안 연구

- 국내(정부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안전문화 활동 및 관련 사업에 관한 현황 조사
- 국내의 안전문화활동 정착·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실천운동과제, 교육체계, 홍보매체 및 홍보방식 등 관련현황 조사
-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방안 연구
-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기구 등 설립방안 마련 및 각종 유사기관인 진흥원 사례 분석

2.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안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민간중심 추진기구로의 전환 연구
- 중앙 및 지역 안문협 협력사업 방안 등 안문협 발전방안

제3절 | 과제의 연구방법

1. 국내 안전문화활동 관련 법·시책 및 사업에 관한 문헌·자료 조사

-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 안전문화 및 안전관리 확산방안 등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집 검토
- 안전문화활동 및 안전관리 분야의 현지활동자료, 정부의 관련자료 분석

2. 관련 전문가와 워크숍 및 현지 조사 등에 따른 대안 검토

3.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추진체계 설립 등에 관한 유사기관의 법제 및 운영사항 검토 후 대안 모색

- 연구기간(2개월)의 제약을 고려해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유사기관 등에 관해서 법체계 및 기능과 역할, 관련 행·재정 지원 방안 등 검토
- 중앙 및 지역에서 시행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와 유사한 기구 등 사례연구를 통한 안문협의 발전방안 제안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민간기구화 방안 제안

제2장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및 현황 분석

제1절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제2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

제3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개선
필요성

제 2 장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및 현황 분석

제1절 | 안전문화 진흥의 의의

1.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활동의 개념

- ‘안전문화’의 시작
 -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국제 원자력 안전자문단(INSAG)』이 ‘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보고서에 처음 사용
 - 일반적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정부가 정의한 용어
 - “안전”이란 자연적 혹은 인적·인위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 “위험”은 미래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원인 또는 원천
 - “재해”는 재난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인명상해나 재산손해 및 환경훼손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포함(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 본계획:2010~2014, p.4)
-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문화 진흥의 배경
 -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된

가운데,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내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이 이러한 대형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안전문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난관리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태도와 관행·의식을 생활화·체질화시켜 국민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안전문화활동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안전문화에 관한 개념

- ‘안전문화’란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 일반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 가치관, 환경, 체계 등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산물 (원유철의원 발의: 2010년 국민생활안전에관한법률안, 제2조)
- 안전문화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 모두가 준수되는 것을 의미(김근영, 2012: 13)¹⁾

○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노력: 재난안전기본법상 안전문화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

1) 참조: 안전문화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 (박계형,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2011).

- 안전문화활동에 관한 정부의 기본시책
 - 안전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시책은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의2에 의하면,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등임

- 따라서 ‘안전문화활동’은 재난안전기본법상 그리고 실무적으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분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관련됨
 - 안전관리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등에 근거할 경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소관부처별 안전분야를 검토하면 알 수 있음

<표 2-1> 안전관리대책 관련분야 및 주관기관

안전관리대책 관련분야	주관기관
보행자 안전	안전행정부
승강기 안전	안전행정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안전행정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사회복지시설 안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교육시설 안전	교육부
유·도선 안전	소방방재청
자전거 이용 안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시설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등산사고 안전	산림청
수상레저 안전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재 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	안전행정부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및 국회예산정책처(2010)

○ ‘생활안전 분야’란

- 안전행정부가 규정한 생활안전 분야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제2차)에서 크게 15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음
- 어린이안전, 노인안전, 경제적 취약계층 안전, 레저안전, 다중이용시설 안전, 생활용품안전, 물놀이안전, 생계형 설비장비 안전, 유해화학물안전, 놀이공간안전, 교통안전, 성폭력 학교폭력 안전, 범죄안전, 사이버 안전, 식품안전 등을 의미함
- 2013년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안전분야를 근간으로 하여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위해요인으로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척결을 국정과제화 하였음

○ ‘생활안전문화’란

-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내용을 검토해 볼 때, ‘생활안전문화’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생명과 재산, 인격과 삶의 가치 등을 항상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국민(주민)의 개인적, 공동체 주

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에 관한 법규의 준수, 안전에 기초한 행동과 사고방식(가치관)의 존중 등을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나를 포함한 공동체 활동으로서 모두의 안전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2. 안전문화활동의 분야 및 내용

○ 안전문화활동의 기본 분야

- 김근영 교수는 관련 법령의 검토 분석을 통하여 실제 안전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개별법으로부터 안전문화운동(활동)의 주요 분야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 즉, 안전의 문제가 중요해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제도개선 사항 등이 활동대상임.
- 즉, 학교 안전문화, 다중이용시설 안전문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안전문화 분야 등으로 이들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부처가 분야별 안전에 관한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음(김근영, 2012: 34~43).

<표 2-2> 안전문화 주요 영역별 활동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생활안전 문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선
	SOS 국민안심서비스
	승강기 안전관리
	안전모니터 자원봉사단체

○ 학교 안전문화의 실태

- 학교 안전문화 제도개선에 있어서 현 실태는 취약 아동 연령의 안전사고 다발장소가 학교로서 심각성이 확인되었음
- 학교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안전사고는 줄지만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였음
-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에 안전사고의 80%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임
- 학교 안전문화의 문제점은 국가차원의 표준 안전교육 지침 미비, 청소년 안전교육 체험시설 부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자재 보급 미흡,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또 다른 미비점으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
- 개선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의 실태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위험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화재발생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2천 8백억 규모임. 사회적 피해 비용은 약 1조 5천 600백억 원에 이름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설정기준의 미흡함. 예를 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고, 다중이용업소의 공통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상 다중이용업소의 관리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다수 지적됨
- 또한 다중이용업 안전교육 및 시설 특성에 따른 문제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교육 부재, 자율방화관리체계 취약, 내부구조 또는 업주 변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불가능, 실내 구조 및 운용 특성에 따른

위험도 증가 등이 나타남

- 더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조차 없어서 그 심각성이 큼
- 개선안으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화의 실태

- 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현황 정보 및 통계가 미흡하고, 사회복지법에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육조차 없어 그 심각성도 만연되어 있음
- 개선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원회 구성, 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2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력

1. 안전문화활동을 위한 체계화 추진

- 그간의 추진 경위
 - '95.2 국무총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5.5 국무총리 주재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개최
 - '96.1 대통령 정책과제로 "안전문화 확립" 추진 지시
 - '96.4 제1차 "안전점검의 날" 시행(매월 4일)
 - '95.5 국무총리 주재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개최
 - '0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시 "안전문화" 관련사항 반영: 안전점검의 날(제6조), 안전관리현장(제7조),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제70조)
 -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은 안전문화 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재난과 관련된 안전 위해요소의 신고·제보 등의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 활동,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별 지원활동,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을 추진해 왔음
- 안전문화 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공적기구의 체계화 필요성 대두
 - 2000년대 후반 계속해서 사고각종 안전사고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 경제활동 저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생활 안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렴하여 부처별,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반 조성 및 안전문화를 진흥하고자 관련 법안을 추진한 바 있음
 -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의 함양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함. 이러한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발전을 통해 안전문화 세계 강국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유사 재난 및 안전관련 업무와 인력 및 물적 자원을 “안전문화(활동)”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념으로 결집시켜 국가적 힘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부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과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부 노력해 왔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임(이종열 외, 2010: 215)
- 이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의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 설립과 운영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2010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부터의 제안

- 2010년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 제안하였던 안전문화진흥원설립관련법(안)에서 가령 제6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도자 육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바 있음
- 동 법(안)에서 특히 안전문화 진흥 등 각종 사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 당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여 국가의 정책목표로서 안전문화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성격상 민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의 형태를 띠고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이후 법안처리 기한을 넘겨 자동폐지된 바 있음

2. 새정부의 안전문화활동을 위한 정책 추진

- 「2010~2014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안전정책 추진내용
 - 정부의 안전정책과 관련한 기본목표는 크게 5가지임
 1. 선진 안전문화 정착
 2.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3.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4.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5.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
 - 이러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9개항의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과 함께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예방 또는 징후감시 단계에서 자발적 감시 및 신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개별 역량강화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자발적 참여문화 유도
 - ② 안전 디자인개념의 전 영역 확산: 안전에 대한 기존 개념인 방어적이고 의존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문화가 접목되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다차원적인 디자인을 안전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법률제도, 정책, 도시설계, 각종 제품 생산, 건축, 시설등 유·무형의 인프라 및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안전사회 실현
 - ③ 예방중심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 추진: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 방향을 대응·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정비, 연구개발 및 법제도 보완 등 사전예방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화

- ④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지방정부, 주민, 지역 기업,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
 - ⑤ 기업의 안전관리 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재해로부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재난 대응 및 복구 등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연구 개발 및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 증진은 물론 공공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 ⑥ 능동적인 국가기반체계 관리: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국가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내지 방지함으로써 위기시에도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기반을 제공
 - ⑦ 신속·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각종 재난·안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종적·횡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보고될 수 있도록 통합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정부적 지휘·통제와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
- 2013년 새정부의 안전문화 정책기조
- 2013년 출범한 새정부인 박근혜정부의 국정의지를 반영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 위해서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
 - 이후 안전행 정부는 2013년 5월 30일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 여기에는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서부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전략 등을 제시

-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특징은 기존의 홍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중심이던 국민안전의 중점관리 분야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모든 위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 국정과제로 3대유형 21개 과제를 중점관리 하겠다고 제안함

<표 2-3> 정부의 분야별 안전관리 중점대상 21개 과제

구분	㉠ 유형 최근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 유형 매년 많은 피해가 반복	㉢ 유형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4대악 범죄 등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식품안전 ⑤ 인터넷 음란물	⑪ 자살	
자연재난		⑫ 풍수해	⑲ 지진
사회재난	⑥ 조류 인플루엔자 ⑦ 유해화학물질 ⑧ 산업단지	⑬ 산불	⑳ 원자력 ㉑ 대형화재
안전사고	⑨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⑩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⑭ 전기(감전)·가스 ⑮ 붕괴 ⑯ 보행사고	⑰ 물놀이 ⑱ 승강기

○ 국민안전 종합대책

- 국민안전 종합대책과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음
- 4대 전략은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 선진제도 도입, 재난·안전 R&D 가반 강화 등 인프라 확충,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확대 등임

○ 안전대책에 대한 감축목표 관리제 실시

- 안전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정책. 안전관리 지표는 사고·범죄 예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선정하되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발생 또는 입건 건수 등)는 지양하도록 하였음

<표 2-4> 시기별·계절별 재난·안전사고 유형 분석

분류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겨울철(12~2월)
자연재해	가뭄, 황사	호우, 태풍, 폭염		대설, 혹한
붕괴사고		여름철 붕괴사고		해빙기 붕괴사고
에너지		전력 수급		전력 수급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사고 수학여행 교통사고	학교급식 식중독	수학여행 교통사고	졸업식 사고
교통안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대설시 교통사고
산불	산불		산불	
생활안전	등산사고 지역축제 사고	식중독 사고 물놀이 사고	등산사고	
전염병	유원지, 여객선, 유도선, 자전거 안전사고		화재	AI 등 가족전염병

○ 안전컨트롤 타워로서 안전행정부의 역할: 안전문화의 진흥

- 지금까지 개별 소관분야별 안전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안행부에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
- 특히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

전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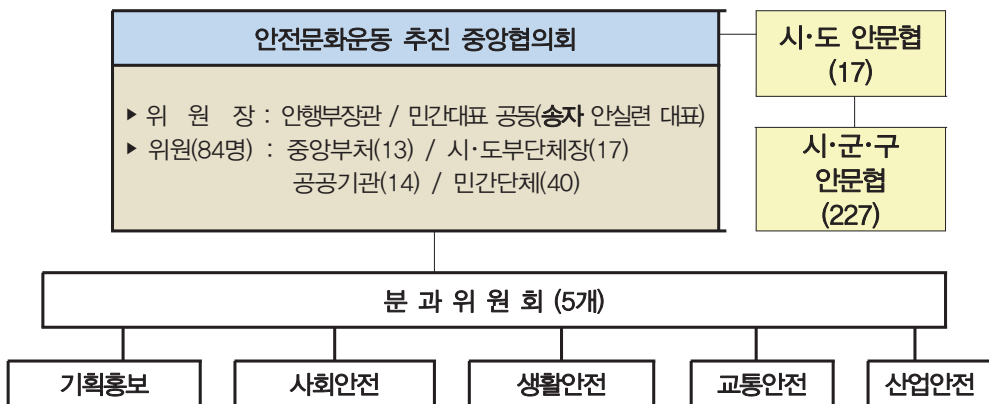
- 이에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2013년 5월 30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
-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로 4대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했고, 또 지역단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와 시군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전국에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확산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임

3. 안전문화활동 추진체계의 구성 및 활동 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중앙협의회 발족 및 운영

- 2013년 5월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80여 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를 출범했음

<그림 2-1>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의 조직도



- 안전문화운동추진 중앙협의회는 사회 안전, 생활·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주요 목표는 지역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음. 이러한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협의회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실천을 통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 가는데 노력하고자 함
- 안전문화운동 추진중앙협의회의 주요 활동
-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2013.7.4, 코엑스): 기초강연, 안전문화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
 - 안문협 분과별 실천과제 홍보·캠페인 등 전개: 대중교통 종사자 간담회, 스쿨존 30km/h 서행(7월), 우리아이 스마트폰 안전 사용, 심폐소생술 직장교육(8월), 산업안전수칙 준수, 재난안전 캠페인, 보행 교통안전 증진 세미나(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중앙 안문협) 송자 민간위원장 및 17개 시도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 안문협) 민간위원장들과 간담회 개최(2013년 10월 25일)
 - 안전문화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12월 17일 KINTEX에서 ‘2013 안문협 전국대회 및 안전문화대상’을 개최
- 중앙협의회 구성 후 각 시도 단위에서도 도지사 및 광역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도별 및 시군구별 안전문화운동추진협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부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 (2013년 9월 4일) 출범
- 허남식 부산시장과 서의택 부산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안전관련 지방청장인 지방경찰청장 소방안전본부장 지방식약청장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시민단체 대표 및 안전관련 기관장

등 58명으로 구성. 민간 행정 언론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연계방안 등 논의를 통한 지역맞춤형 안전 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 활동

-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이하 안문협)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2013년 11월 13일 부산시청)

○ 인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시협의회

- 안전문화운동 실천 총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인천시는 2013년 11월 13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시 협의회’(공동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를 출범하였음
- ‘시민안전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4대약 근절 등 안전사회 구현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관한 선제적·예방적·근원적 대책을 포함하는 안전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외에도 6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어린이·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감축목표제 실시하기로 하고, 안전지수를 만들어 구체적인 발생률 등 감축목표제를 실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추진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기별·계절별 안전관리 8개 분야 25개 과제도 감축목표를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 산업 등 전 분야의 안전수칙, 잘못된 관행 발굴 시정: 사회, 생활,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임
- 시민안전을 위한 일상생활 제도개선 <맞춤형 안전관리 특화시책> 추진: 시민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 특화시책을 적극 발굴, 도입할 방침

- 사례: 시군단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 서산시장과 유장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서산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39명의 위원으로 서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산시협의회가 구성되었음(2013년 8월 23일)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 추진을 위해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의 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됨
 - 구체적으로는 4대악 범죄 척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가정 및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안전캠페인: 안전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계절별로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제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 예정임

제3절 |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개선 필요성

1. 안전문화 분야의 관리 실태

- 안전문화 관련 법제
 - 전반적으로 안전문화 관련 법령의 수를 살펴보면 규범(57개), 행동(45개), 시스템(33개), 가치(19개)순이며, 안전문화 (장소)영역별 법령 수는 동일 영역에 포함된 법령의 경우 중복성 혹은 상이한 기준 등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크게 볼 때, 재난안전(23개), 공공시설(16개), 교통(12개), 민간다중이용시설(8개) 정도로 조사되었다고 분석함(김근영, 2012)
 - 안전문화 사업대상별 법령 수는 일반인(58개), 어린이(3개), 여성(1개), 노인(1개), 장애인(1개)순으로 많고, 안전문화 재난유형별 법령 수는 인적재난(37개), 사회적 재난(24개) 자연재해(15개) 순임

- 안전문화의 (장소)영역별로 주요 법령이 존재하는 특징이기도 함(김근영, 2012: 89)
- 안전문화 관리상 특성
 - 안전문화 분야는 사업재해, 교통사고, 인적재난 등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소적으로 구분하였을 때, 안전 취약계층 중 어린이의 경우 사고사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학교임
 -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며, 안전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이에 안전문화 확보가 중요한 곳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학교 안전문화, 다중이용시설 안전문화, 사회복지시설 안전문화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김근영, 2012: 86)
- 안전문화 제도개선 필요성 및 주요 추진과제
 - 민간의 자율적 안전문화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문화를 형성발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김근영, 2012: 101 이하)
- 안전문화 제도개선 시책들
 -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공공기관, 시군구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포상을 기업 및 민간단체로 확대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노력 (『안전문화 우수기관(단체)의 등급인증제』도입, 『한국 안전문화대상』)
 - 안전문화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 (학교 안전관리 지침서 및 자료개발과 적극적인 활용,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유아 전문 안

전프로그램 개발, 개별 교과목에 안전교육 반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성인용 적합한 안전의식 선진화 교재개발 등)

- 안전사고의 80% 이상인 사람들의 안전수칙 무시와 불완전한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필요 (안전문화센터 건립, 사고차량의 전시, 교통극 놀이, 안전문화 캐릭터 등 다양한 도구의 개발, 안전문화 평가프로그램 개발 등)
- 안전문화 담당자의 자질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안전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담 직제 신설, 안전문화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율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 민간단체에 의한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필요

-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민간단체에 의한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이 자원봉사기관, 주민자치활동 및 체험관 시설 설치 등에 한정 되어 있는데 이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 및 그 외의 단체 등에 대한 육성 지원이 필요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 운영, 안전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민간단체의 안전문화 조사 지원)

2. 안전문화 분야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 제도개선 필요성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특히 안전문화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학교 안전문화와 관련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통합적 운영의 체계화가 요구됨

- 안전문화와 안전관리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 필요
 - 재난안전기본법상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안전문화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고, 동법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평가시 안전문화에 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관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문화 관련 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전문화에 관한 평가체계를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진단 혹은 안전지수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컨설팅 하는 시책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의식, 안정성 지수 등에 관한 자료수집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주체가 필요함
 - 어린이 안전의 경우에 교육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안전의 경우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연계하여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노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연계하여 안전문화를 증진하도록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
 - 이렇게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분야별 및 소관부처들 간의 공동협력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함
 - 이처럼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 필요

3.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 필요성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의 제도적 보완 및 강화 필요
 - 정부는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활성화돼 민간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안전문화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나아가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 주도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주체(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방향
 - 안전행정부를 대신하여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안전문화 사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총괄 조정하는 추진체계 확보가 필요함
 - 안전행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안전문화진흥원」 같은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고려하고 있음
 -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효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설립 운영을 제도화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총괄 조정 역할의 적시는 물론 자체적 예산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 제도개선은 물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실무위원회의 업무나 권한이 명확하여야 함. 안전문화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갖춰져야 함
 - 추진체계는 재난안전기본법의 범주 안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법등의 강구가 요구되지만 2010년과 같이 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수법인 설립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음 장에서는 안전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분야는 다르지만 활동 및 사업 형태적으로 유사한 진흥원 기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함

제3장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 관련 유사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의 필요성 및 대상

제2절 안전관리 분야의 유사기관

제3절 타 분야의 유사기관

제4절 사례분석 정리 및 시사점

제 3 장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 관련 유사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의 필요성 및 대상

- 유사기관 및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의 필요성
 - 국내외 안전문화기관 사례의 검토를 통해 향후 설립이 필요한 안전문화진흥원과 관련하여 그 기관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경우 안전문화 진흥에 관련된 독립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례를 찾기 곤란하여 선행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이종열 외 2010), 동시에 유사 공공진흥원 사례를 검토하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사례기관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기관개요, 조직 현황 및 기능과 사업내용, 재정(수입)현황 등을 살펴보고 향후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의 규모와 형태,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음

<표 3-1> 진흥원 관련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별 기관 사례

안전관리 분야	한국재난안전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기타	평생교육법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유사기관의 공통점: 재단법인의 지위
 - 국내 유사 공공진흥원의 설립은 공공법인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음(이종열 외, 2010: 241~242)
 - 일반적으로 재단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비영리, 독립성 목적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전반의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전 문화·조직화·제도화 된 자선을 실행하는 기관임
 - 재단은 독립적인 기금과 이사회의 구성된 독립된 기구의 형태를 띠며, 해당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비정부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임
- 재단의 설립 목적
 - ① 공공업무의 효율화의 필요성: 재단의 첫 번째 설립목적은 준민영화의 수단(semi-privatization), 즉 공공적인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임. 다시 말해 국가나 정부 등 공식적인 행정 체계 내에서 수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의심되는 임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구가 재단임

- 안전문화 지원이나 재난정책의 경우 재난 및 안전의 관리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철학, 비전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체계 내에서 안전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 ② 민간협력과 자원동원의 필요성: 재단을 설립하는 두 번째 목적은 공공의 목적달성에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 및 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함임. 따라서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고 민간의 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 협력기구를 설립, 다각적인 민간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③ 공공적인 업무 수행의 필요성: 재단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자기가 아닌, 자기 이외의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non-profit), 비정부(non-government) 기구임
- 즉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재단을 설립, 특정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적인 업무 수행 및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임

제2절 | 안전관리 분야의 유사기관

1.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개요
 - 2011년 4월 설립: 민법 제32조 및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http://www.safeleader.org>)
- 기능 및 주요 사업
 -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정책 및 제도의 교육, 연구개발, 컨설팅·진단을 통하여 안전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정관2조)
 - 주요사업: 법정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승인 및 연구용역사업, 재난안전 컨설팅, 교육 및 홍보

2. 한국시설안전공단

- 개요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설치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
 -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
 - 공단의 정관(定款)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주요 기능과 역할

-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공유, 점검 및 진단기술자 양성 교육,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녹색건축사업 수행, 긴급 재난영상 정보시스템 운영,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안전분야 공적서비스 및 사회공헌활동 등 동법 제29조에 명기되어 있음

○ 재정운영 현황(2012년 기준)

- 매출액 (총 398억): 정부출연금 96억, 진단 및 연구사업 296억, 교육사업 5억7천
- 관리업무비 내역 및 잔액: (관관비 및 제조원가 374억)-사업비 44억-(인건비, 감가상각비, 교육훈련비 등)-연구개발비 70억-(세금과공과-수선유지비 등) = 122억

○ 운영재원

- 공단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28조(재원)에서 재정수입은 직접 ①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임
- 공단 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3~24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지도 감독을 받음(동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의3)

제3절 | 타 분야의 유사기관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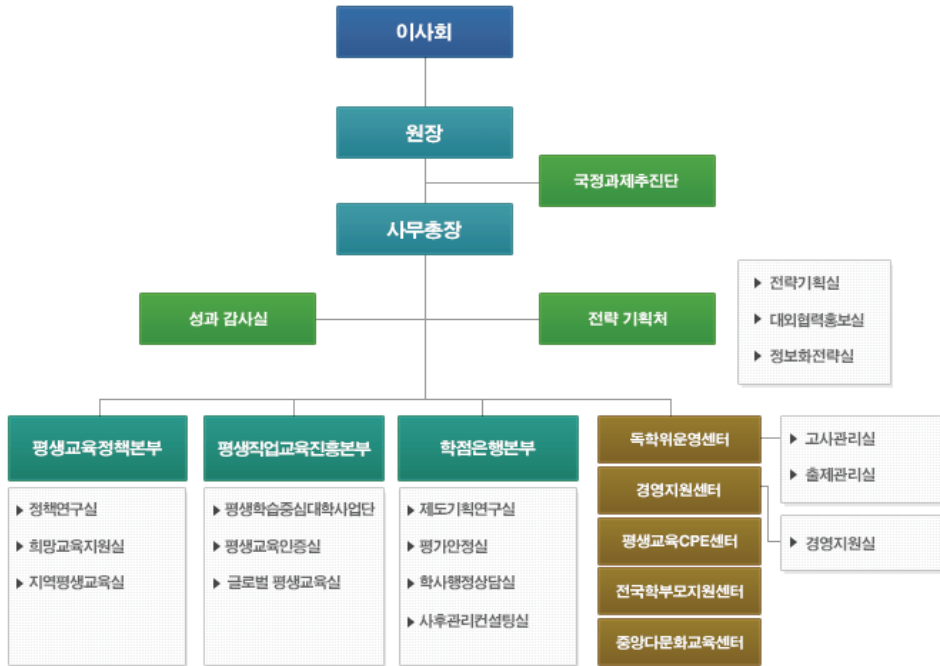
○ 기관개요

- 「평생교육법(제6003호, 법명개정)」전부개정(99.8)에 따라 2000년 2월, 평생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시작하였음. 이후 보다 나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위하여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개정 「평생교육법」제 19조 제1항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조직 및 인력

- 평생교육정책본부, 평생직업교육진흥본부, 학점은행본부로 구성
- 독학위운영센터, 경영지원센터, 평생교육CPE센터, 한국학부모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5개의 센터를 운영
- 기관장 및 이사, 정규직원 75명, 비정규직 80명 등임

<그림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2013년 12월 현재)



○ 주요 기능과 역할

- 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조사 및 지원,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학습계좌제를 비롯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기획, 집행, 평가인정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와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분산·운영되었던 국가평생교육의 핵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표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력 현황(2013)

(인원단위 : 명)

구분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 3/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1	1	1	1	1
		비상임	0	0	0	0	0
	이사	상임	0	0	0	0	0
		비상임	10	10	10	12	12
	감사	상임	0	0	0	0	0
		비상임	1	1	1	1	1
	기타	0	0	0	0	0	0
	상임임원계(A)	1	1	1	1	1	1
직원	정원	28	28	28	28	55	76
	현원(B)	23	27	26	23	48	74
무기계약직		0	0	36	39	27	16
비정규직	기간제	0	0	51	69	72	64
	단시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소속외인력		0	0	0	0	0	0
임직원총계(A+B)		24	28	27	24	49	75
여성현원		0	0	12	0	23	37

- 또한 국가 평생교육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정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함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각종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관리,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지원사업 수행은 물론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각종 제도를 운영함

○ 주요 사업

- 평생교육진흥사업: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성인 문해교육지원,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평생학습대상, 다모아 평생교

육 정보망 등의 사업 추진

-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 제 23조에 의해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운영
- 학점은행제: 2012년 기준 총 133,771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
- 평생교육연수: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요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CPE센터를 설립. 평생교육CPE센터 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음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정책연구수행, 다문화교육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다문화인식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진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 수입과 지출 내역: 총 340억

- 2013년 기준 정부순지원수입 210억
- 정부출연금(117억): 평생교육진흥원출연,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평생학습계좌제도입, 학부모평생교육참여지원, 4050뉴스타트통합지원
- 국고보조금(92억): 대학중심평생학습활성화지원
- 위탁 및 독점수입(115억): 학점은행제 수수료(107억), 독학학위제 수수료(8억)
- 기타 수입(1억): 이자수입, 간접비 수입 등
- 정부출연금은 고유사업비(71억), 출연사업비(69억)로 부분 지출되며, 국고보조금은 국고사업비로 모두 지출됨. 그리고 인건비(76억), 경상운영비(31억)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 2013 회계연도 예산서에서 재정수입내역을 보면, 정부출연금 43억, 출연사업수익 33억, 수탁사업수익 9억, 자체사업수익 10억(2012년 결산 기준) 수입

<그림 3-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입내역(2013년 예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수입	정부지원수입	직접지원	출연금	4,510	7,627	11,770
			보조금	7,508	5,743	9,233
			부담금	0	0	0
			이전수입	0	0	0
			부대수입	0	0	0
		간접지원	사업수입	9,757	10,884	11,550
			위탁수입	0	0	0
			특점수입	0	0	0
			부대수입*	61	134	67
		소계			21,836	24,388
지출	인건비			5,259	6,215	7,599
	경상운영비			2,966	16,117	3,115
	사업비			15,510	18,413	23,356
	차입상환금			0	0	0
	기타			781	1,460	0
	지출합계			24,516	42,205	34,070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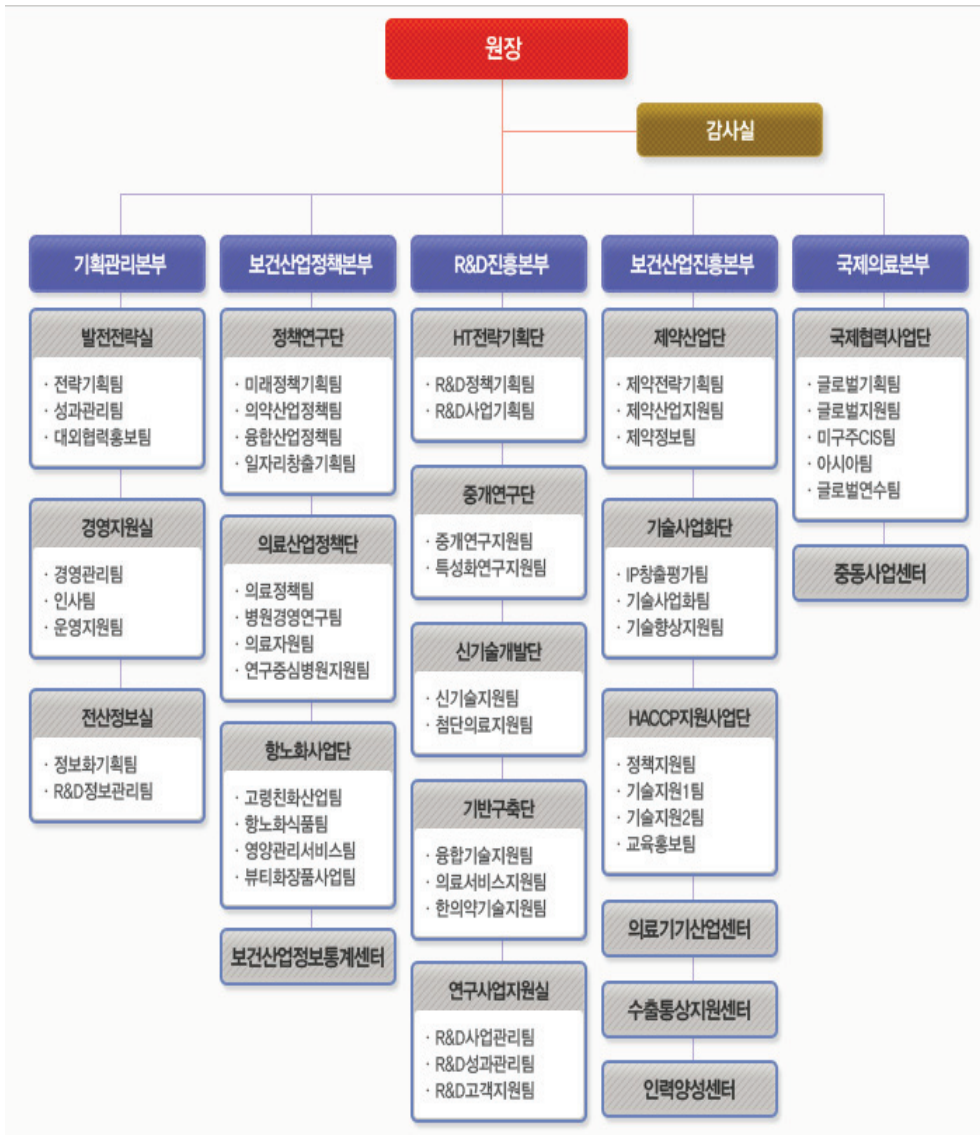
○ 기관개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법인으로 하며, 동 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²⁾

○ 조직 및 인력

- 기관장 등 현원 139명(정원 153명),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165명 등

<그림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도



2) <http://www.khidi.or.kr/www/run.do?menu=05020300>(2013년 12월 검색).

○ 주요 사업

- 주요사업 : 성과중심 HT R&D지원사업, 보건산업 정책 선진화 지원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보건의료기술 사업화촉진사업 등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선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확보,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주요사업으로 설정 추진함

○ 재정운영 현황

<표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내용에 따른 재정운영 현황(2013)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결산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보건산업진흥사업	15,355	17,117	19,788	18,837	25,550	23,580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R&D연구개발사업)	150,712	193,162	218,122	240,139	285,954	315,450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 (수탁사업)	1,153	1,183	538	0	0	0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 (수탁사업)	0	0	0	0	0	0
해외박람회지원사업(수탁사업)	0	0	0	0	0	0
보건산업통계DB구축사업	0	323	0	0	0	0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0	134	133	482	513	850
해외환자유치활성화지원사업	0	2,899	3,949	4,554	4,375	4,526
영양플러스사업	0	0	260	0	0	0
비만자가평가관리사업	0	0	176	0	0	0
뷰티산업선진화지원사업	0	0	599	817	810	750
의약품제조관리(GMP)인력양성지원사업	0	0	0	0	378	4,885
의산업 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	0	0	0	0	0	3,000

<표 3-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개요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과목	2012예산	2013예산	증(△)감	과목	2012예산	2013예산	증(△)감
계	31,098,599	36,171,390	5,072,791	계	31,098,599	36,171,390	5,072,791
1. 정부출연금	14,395,000	19,362,000	4,967,000	1. 진흥원 운영	31,098,599	36,171,390	5,072,791
가. 진흥원 운영	14,395,000	19,362,000	4,967,000	가. 인건비	8,159,872	9,062,047	902,175
				나. 사업비	18,806,446	23,580,000	4,773,554
2. 자체수입	16,703,599	16,809,390	105,791	다. 경상운영비	2,808,370	2,864,000	55,630
가. 사업수입	16,503,599	16,609,390	105,791	라. 청사관리비	525,000	161,000	△364,000
수탁용역수입	13,701,000	13,701,000	0	마. 예비비	798,911	504,343	△294,568
품질인증수입	62,000	62,000	0				
교육훈련수입	500,000	500,000	0				
기타사업수입	2,240,599	1,846,390	△394,209				
이월금	0	500,000	500,000				
나. 자산운영수입	200,000	200,000	0				
이자수입	200,000	200,000	0				

- 수입과 지출 내역 중에서 수입의 경우 정부출연금 중 진흥원 운영경비로 193억 원의 수입액이 계상되어 있고, 자체수입금은 168억 원으로 사업수입 166억(수탁용역, 품질인증, 교육훈련, 기타사업)과 자산운영수입(이자수입 2억) 등임. 지출의 경우는 지출은 진흥원 운영비 361억(인건비 90억, 사업비 235억, 경상운영비 29억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

3.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관개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콘텐츠기반 문화산업진흥과 발전, 콘텐츠 문화산업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적 삶 기여, 창조경제시대국가경제발전 선도”라는 설립목적의 구현, 그리고 “콘텐츠산업 진흥으로 국가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설립

- 정부는 2009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시켰음

○ 주요 사업

- 콘텐츠 해외진출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문화기술 활성화, 산업기반 조성을 주요사업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
- 전략시장 콘텐츠 수출강화-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해외전시마켓참가지원, 아시아애니메이션 공동마켓 활성화, 신흥시장개척지원 등
-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글로벌콘텐츠 센터 운영, 해외사무소 운영,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 산업선도적 정책개발로는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동향정보제공, 콘텐츠 산업동향분석 및 지원
- 한류 킬러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게임산업육성, 만화제작지원, 애니메이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등 수행
- 핵심콘텐츠 기술개발 강화 및 차세대 콘텐츠 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함

○ 조직 및 인력

- 기관장 등 현원 189명(정원 195명),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54명 등

<그림 3-4>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체계



○ 재정운영 현황

- 2012년도의 경우 사업비 총 241,369백만원 중 총 237,255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집행률이 98.295%로 기록되었음

<표 3-5>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입과 지출(2013 회계연도 기준, 2800억)

(단위: 백만원)

계정	수입					지출				
	출연금	보조금	사업	위탁	기타	계정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1.문화콘텐츠진흥		73,122								
2.게임산업육성		17,280								
3.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65,392									
4.문화산업기관지원		18,170								
5.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55,774								
6.지역·민족문화진흥		500								
7.기타재원 사업			57	70	21,968					
8.자부담사업					28,605					
소계	65,392	164,846	57	70	50,574	소계	14,402	5,690	260,847	
총계		280,939					280,939			

- 문화관광부 고유계정으로 지원받는 정부직접 지원금 내역: 문화콘텐츠 진흥, 게임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문화산업기관지원, 방송 영상콘텐츠산업육성, 지역·민족문화진흥, 기타재원 사업
- 그리고 기타 자체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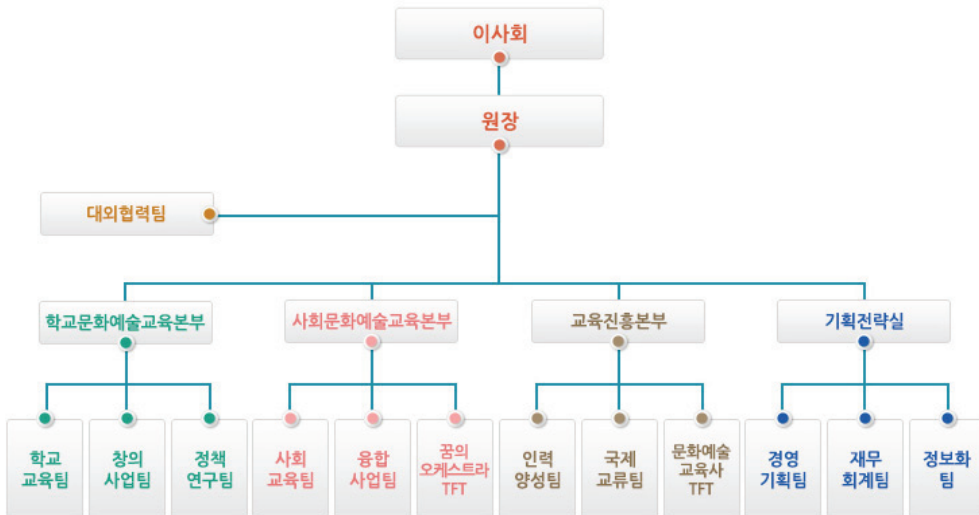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 1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2006. 8.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음.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에 의하면 문화예술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며, 진흥원의 형태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직 및 인력

- 기관장, 임직원 등 현원 34명(정원 36명),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원 49명 수준

<그림 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도



○ 주요 사업내용

- 학교문화예술교육: 초중고등학교 강사파견 및 문화예술교육 실시, 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문학 뮤지컬 분야 등의 지원사업, 학교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 교육위원회 및 강사협의회 운영,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평가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 사회문화예술교육: 아동양육시설 문화예술교육, 노인장애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수행

- 국제교류: 재외동포 지원사업 및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기획운영, 전 세계의 세종학당 한국문화교육지원(중국, 영국, 미국, 터키, 케냐 5개국에 6개소 설치), 유네스코 협력사업 등 추진
- 창의교육센터에서는 교육과정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년 기준 23개교가 지정되어 있음. 그리고 예술꽃씨앗 학교 지원사업의 시행은 전국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12년 기준 10개 학교가 문화예술교육특성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재정운영 현황

<그림 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입지출 현황

수입*지출현황[교유사업]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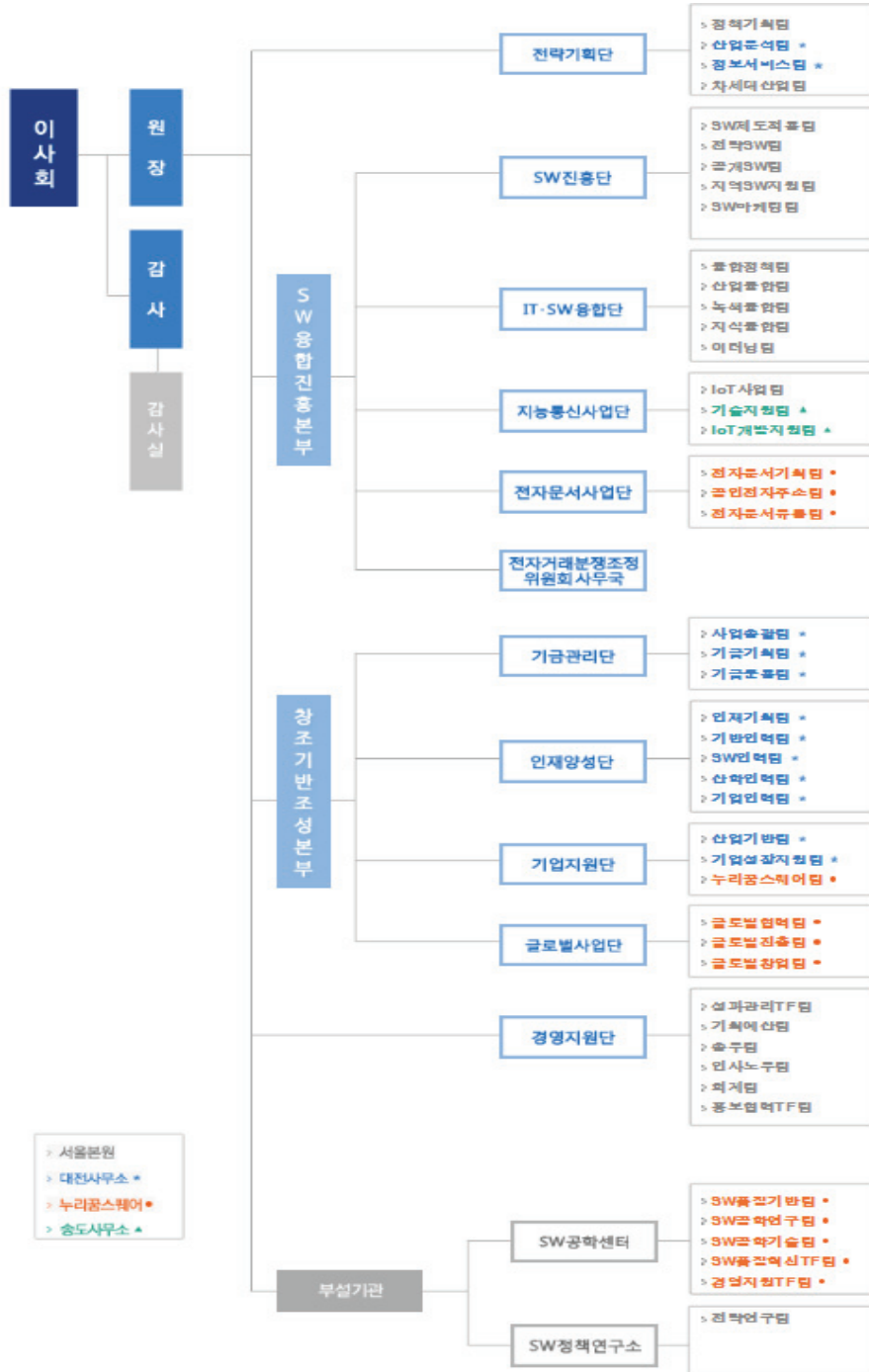
구분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수입	정부지원수입	직접지원	출연금	0	0	0
			보조금	64,649	79,011	108,680
			부담금	0	0	0
			이전수입	0	0	0
			부대수입	0	0	0
		간접지원	사업수입	0	0	0
			위탁수입	0	0	60
			독점수입	0	0	0
			부대수입*	0	0	0
		소계			64,649	79,011
	기타사업수입			0	0	0
	부대수입**			0	0	0
	출자금			0	0	0
	차입금			0	0	0
기타			0	0	0	
수입합계			64,649	79,011	108,740	
지출	인건비			923	1,322	1,569
	경상운영비			763	1,070	1,791
	사업비			62,963	76,619	105,380
	차입상환금			0	0	0
	기타			0	0	0
	지출합계			64,649	79,011	108,740

- 2013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정부직접 지원보조금으로 1,086억과 위탁수입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의 경우는 사업비로 그 대부분인 1,053억을 지출하고 있음
-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는 각각 16억, 18억을 사용함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관개요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발전, 소프트웨어 기술진흥과 품질관리 및 전문성 향상, 전자거래 및 이러닝 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워짐
- 조직 및 인력
 - 기관장, 임직원 등 현원 287명(정원 286명), 무기계약직 등 500여 명

<그림 3-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직도



- 주요 사업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 인력양성, 연구기반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통신기업성장 지원, U,Korea선도산업 등도 수행
 - 산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해서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미래부), 신산업 진흥으로는 이터닝산업 활성화, 산업융화진흥, 3D산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정책(산업통상자원부), 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프로그램(외교부)으로 해외봉사단(퇴직전문가) 해외파견 등도 수행함
- 재정운영 현황
 - 재정수입의 경우,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3,168억 수입, 정부보조금 수입으로 70억, 기타 차입금과 전기이월 등을 포함하면 총 수입은 3,960억임
 - 재정지출의 경우 사업비로는 3,378억을 지출했으며, 경상운영비 125억, 인건비 184억, 기타 270억 등 지출하였음

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관개요
 -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재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조직 및 인력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은 기관장과 비상임 이사 14명, 상임

감사 1명 등 총 정원 249명으로 현원은 235명,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은 70명 수준임

<그림 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직체계



○ 주요 사업내용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기술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조사,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건전성 조사,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기술혁신의 전주기 상시 책임 관리자 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수행함

○ 재정운영 현황

■ 기관운영예산

구분	항목	예산	구분	항목	예산
수입	정부출연금	3,718	지출	인건비	23,187
	사업수입 (기술개발 평가관리 등)	72,216		사업비	44,383
	사업외수입(이자수입 등)	250		경상비	7,038
	차입금(지방이전)	18,254		지방이전비	18,254
	합계	94,438		합계	94,438

- 2013년도 예산수지 총괄표에 의하면, 정부출연금 수입은 37억, 자체수입 725억으로 944억임. 이중에 자체수입의 주요 사업수입으로는 산업기술평가관리비 등이 722억으로 대부분의 수입원이 되고 있음³⁾
- 지출의 경우는 사업비로 444억 지출(주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비로 사용), 인건비 232억, 경상운영비 70억, 지방이전비 180억, 예비비 15억 등으로 지출함

3) http://www.keit.re.kr/sub06/list.do?gbn=06_061-3(검색일 : 2013년 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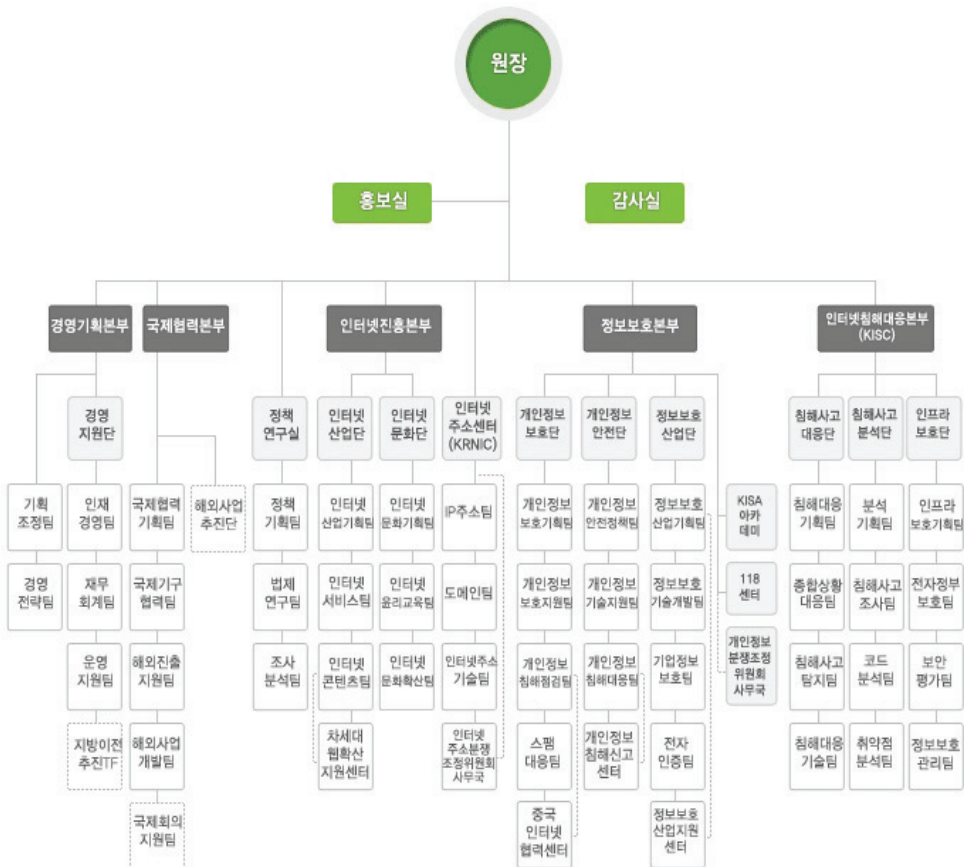
7. 한국인터넷진흥원

○ 기관개요

- 1999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립, 2004년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승격하였고,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민법 준용의 재단법인

○ 조직 및 인력

<그림 3-9>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직도



○ 주요 사업내용

- 인터넷 정책기획(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연구, 조사분석, 법제분석), 인터넷 문화 진흥, 인터넷 주소 관리, 인터넷 침해대응, 개인정보보호, 인프넷 보호 및 인터넷 사업 진흥을 관장함

○ 재정운영 현황

- 2013년도 수입지출 총괄표에 의하면, 정부직접 지원금인 출연금의 경우 796억, 외부수탁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55억, 기타 등 수입은 1,083억임
- 그 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사업으로 224억, 기타 사업으로 337억 등 총 수입은 1,390억임
- 지출의 경우 인건비 190억, 경상운영비 721억, 사업비 1,121억 등 사용됨

<표 3-6>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지출											
	정부지원수입										기타 사업수입	부 대수입	출 자 금	차 입 금	기 타 (전 달 배 당 등)	수 입 합 계	인 건 비	경 상 운 영 비	사 업 비	차 입 금 상 환	기 타	지 출 합 계
	정부직접지원					정부간접지원 (고유목적사업수입)																
	출 연 금	보 조 금	부 담 금	이 전 수입	부 대수입	사 업수입	위 탁수입	독 점수입	부 대수입	소 계												
<고유계정>																						
○ 일반회계사업계정	79,658	-	-	-	-	-	-	-	-	79,658	-	-	-	-	79,658	19,087	7,213	60,822	-	-	487	87,609
○ 외부수탁사업계정	-	-	-	-	-	-	-	-	-	-	5,063	-	-	-	5,063	-	-	5,063	-	-	-	5,063
○ 자체사업계정	-	-	-	-	-	-	-	-	-	20,414	-	-	-	3,169	23,583	-	-	15,632	-	-	-	15,632
소 계	79,658	-	-	-	-	-	-	-	-	79,658	25,477	-	-	3,169	108,304	19,087	7,213	81,517	-	-	487	108,304
○ 방송통신발전 기금사업계정	22,401	-	-	-	-	-	-	-	-	22,401	6,309	-	-	-	28,710	-	-	28,710	-	-	-	28,710
○ 정보통신진흥 기금R&D사업 계정	-	-	-	-	-	-	-	-	-	1,911	-	-	-	1,911	-	-	1,911	-	-	-	-	1,911
소 계	22,401	-	-	-	-	-	-	-	-	22,401	8,220	-	-	-	30,621	-	-	30,621	-	-	-	30,621
총계	102,059	-	-	-	-	-	-	-	-	102,059	33,697	-	-	3,163	138,925	19,087	7,213	112,138	-	-	487	138,925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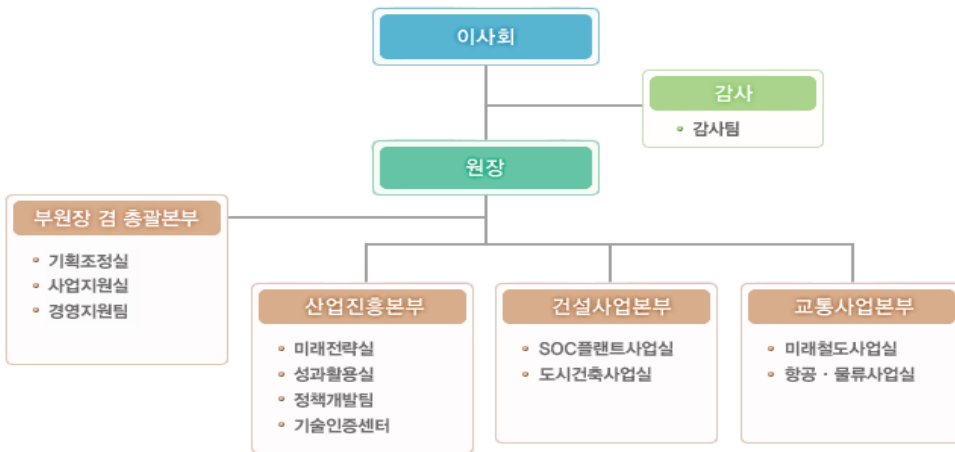
○ 기관개요

- 2002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설립, 2006년 정부산하기관기본관리법에 의해 정부산하기관 지정,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 2013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 3에 의거하여 기관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의 거하여 설립

○ 조직 및 인력

-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현원 85명(정원 87명), 비정규직 8명 수준임

<그림 3-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직도



○ 주요 사업내용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건설기술연구사업, 물관리 사업, 플랜트 연구사업, 도시건축연구사업,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 건설교통

기술 지역특성화, 건설교통연구기획, 철도기술연구, 항공기술연구사업 등 수행

- 국토교통기술이전 사업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 건설교통통신 기술에 대한 소개와 기술공급자 및 기술수요자 간 기술 이전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전 시스템 등 수행

- 기술인증

○ 재정운영 현황

- 고유사업으로서 정부순지원 수입은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위탁수입으로 185억8천만원임(세부적인 수입원은 다음 표를 참조). 기타 수입 26억 등 합쳐서 총 212억 수입을 기록하였음
- 지출항목을 보면 인건비 77억, 경상운영비 35억, 사업비 94억, 기타 등임

<표 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재정지원 수입(계획)표(2013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소계	계
○ 건설기술연구	-	-	-	-	-	1,509	-	-	1,509
○ 물관리연구	-	-	-	-	-	973	-	-	973
○ 플랜트연구	-	-	-	-	-	1,036	-	-	1,036
○ 도시건축연구	-	-	-	-	-	2,200	-	-	2,200
○ 건설교통기술촉진	-	-	-	-	-	2,188	-	-	2,188
○ 건설교통지역기술특성화	-	-	-	-	-	261	-	-	261
○ 건설교통연구기획	-	-	-	-	-	124	-	-	124
○ 교통물류연구	-	-	-	-	-	2,346	-	-	2,346
○ 철도기술연구	-	-	-	-	-	4,045	-	-	4,045
○ 항공기술연구	-	-	-	-	-	1,845	-	-	1,845
○ 건설신기술심사위탁사업	-	-	-	-	-	1,500	-	-	1,500
○ 교통신기술심사위탁사업	-	-	-	-	-	300	-	-	300
○ 기술인증수수료	-	-	-	-	-	255	-	-	255
총계	-	-	-	-	-	18,582	-	-	18,582

제4절 사례분석 정리 및 시사점

- 안전관리 분야 유사기관의 경우 특별법상 재원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서 주요사업은 법정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승인 및 연구용역사업, 재난안전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함. 경상예산은 국고보조와 연구용역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음. 아직 규모가 10명 미만으로 민간기관으로서의 활동성은 미약함
 - 반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설치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 공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국토교통부으로부터 나오는 정부출연금과 다양한 보조금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는 목표로 삼은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공유, 점검 및 진단기술자 양성 교육 등과 같은 기능을 재원마련의 큰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진단과 연구사업’이 매출액의 2/3 수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서 분명하고 안정적인 재원창출 아이템을 갖고 있음
- 주요 유사진흥원의 운영체계 비교

<표 3-8> 3개 주요 진흥원기관의 운영체계 비교(2013년 기준)

유사기관 운영체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근거 및 발전과정	-평생교육법에 근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 분야의 사업을 받아 ‘교육센터’ 설치부터 시작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사업집행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으로 설립 -주요 의료분야 진흥법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근거 -2009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총3개

유사기관 운영체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단계를 거쳐 전담기구로서 '교육진흥원'으로 발전시켰음	로부터 발생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법인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주요 독자사업	-주요 영속사업은 특별히 학습계좌제와 연계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전체 사업과정을 통합관리 하도록 사업화하여 운영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목적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시행함	-문화산업진흥과 발전, 콘텐츠 문화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주요사업은 콘텐츠 제작지원, 문화기술 활성화, 산업기반 조성, 영상문화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게임과 모바일산업 등 육성, 제작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조직운영체계	-기관의 조직구성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속사업 3개 분야를 본부체제로 구축하여 영속적 사업분야를 조직운영체계 3개 근간으로 구성 -파생되는 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5개 센터를 운영 -각 '본부'마다 기본적인 정규인력은 '10명'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비정규직 등으로 지원인력을 구성	-조직구성은 정책분야, 투자연구사업분야, 기술진흥 및 사업분야, 의료의 국제협력분야 등 3개 주요분야로 본부 구성 -세부사업별로 3~40명 정규직 임용체계를 두고 '단' 및 '센터'구조로 운영함	-조직구성은 주로 사업분야별로 크게 사업지원, 콘텐츠, 게임산업과 CT 등 4개 주부서를 본부로 운영 -이하 과단위에서는 팀제를 도입하여 정책별, 사업시행 지역별로 세분한 소단위 집행팀제를 운영하고 있음
인력구성 및 관리체계	인력관리 부분에서는 주로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해서 탄력적인 사업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75, 비정규직 80	-지원인력은 약 10~15명 수준으로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정규직 140명, 비정규직 165명으로 1.2배 정원 수준을 유지함	-정규 인력은 약 190명으로 타 기관과 달리 비정규직은 비교적 1/4수준으로 50여명임
재정운영 (재원조달 방법)	운영경비 총액 340억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지원금으로는 정부출연금 1/3, 평생교육사업과 관련된 국고 보조금 지원(2/5), 학습운영 시스템에서 유발되는 수수료와 수료료 등 독점 수입금(1/3) 등이 재정지출을 뒷받침	-2013년 기준으로, 인건비는 약 9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 증가한 수준임 -정부출연금 193억, 자체 기술 분야 사업추진에 의한 수입액 168억 등이고, 지출총액은 사업비로 235억임	-전자통신, 게임, 문화콘텐츠 등 같은 사업분야의 중요성과 기존 3개 기관이 통합운영되면서 총사업비는 약 2,400억 수준임 -사업비 지원은 주로 정부보조금이 60% 수준이고,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30%, 나머지는 위탁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주요 유사진흥원의 운영체계 비교로 본 시사점
 - 각 분야별 진흥원 설립 방식은 진흥분야의 기본법상(평생교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설립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직접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제정하여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있음
 - 독자적인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진흥원의 소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들은 ‘기술개발 및 지원’, 중앙부처의 관할 하에 있는 사업분야를 위탁관리 하기 위한 관리 및 사업집행기관으로서 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대표사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인데, 이 기관의 주요사업을 보면, 콘텐츠 제작지원, 문화기술 활성화, 게임과 모바일산업 등 육성, 산업기반 조성, 제작지원, 영상문화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등과 같이 확실한 사업의 독자성을 갖고, 중복기능이 없이 정책내용을 구성하는 사업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자체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면서 독자적인 시장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채택하여 중앙부처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있음

제4장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 방안 연구

제1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

제3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행·재정 지원 방안

제 4 장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 방안 연구

제1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1. 2010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안

- 2010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
 - 2010년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 제안하였던 안전문화진흥원설립관련법(안)에서 제36조에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하였음
 -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우선 안전문화 추진협의회(제31조)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안전문화 활동의 지원(제32조)을 제안하였음
 - 특히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 등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제36조)을 제안하면서, 이 기관을 재단법인으로 하여 민법상 준용하는 기관으로 추천하였음
 - 경비출연의 경우는 동법 제6항과 제7항에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하였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등의 권리도 규정하였음
 - 주요 안전문화활동으로는 1.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 조사 수집, 2. 안전문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안전문화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4. 안전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인증 및 각종 지원사업, 5. 안전문화와 관련된 국제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제안하였음

2. 2010년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의 제안

- 2010년 연구가 제안한 설립법인 유형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형태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규정과 개별 법률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보건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안전규정들을 총괄·조정하여 부처별,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을 통합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함(이종열 외, 2010: 290)
 - 따라서 법인의 설립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형태로서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적용받는 것으로 함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법인 (개별법상)
 - 특수법인 중 개별법인 재단설립 특수법인 관련 육성법 및 촉진법, 진흥법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는 법인체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근거하여 국민생활안전 관리기반의 조성 및 안전문화 선진화의 구축, 그리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활동·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구와 다른 차별성을 지닌 비영리 공공법인격의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이 요구됨
- 설립법인 설정 이유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발의된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을 체질화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안전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전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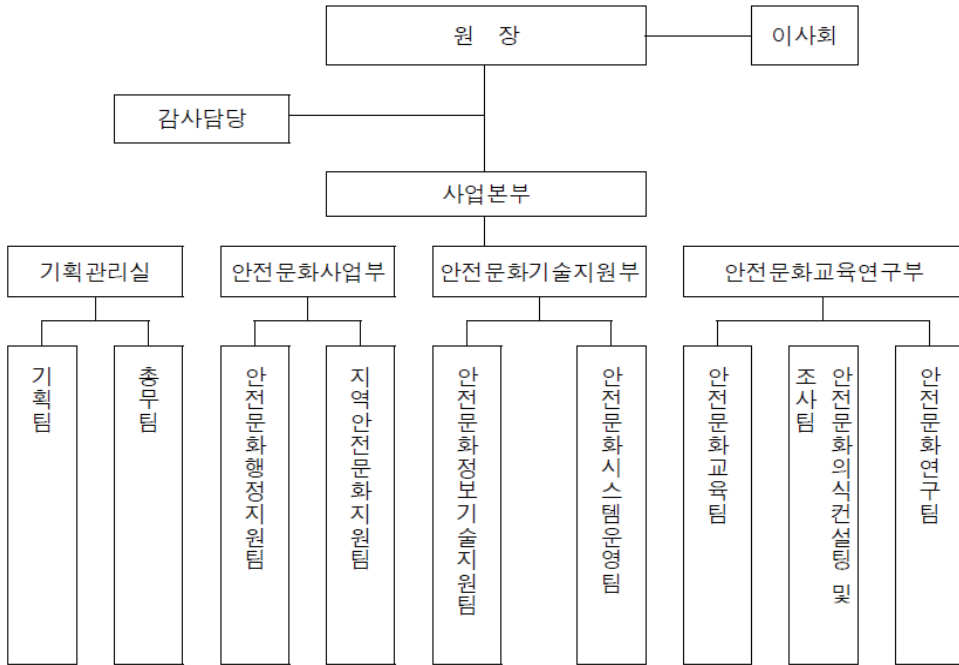
- 따라서 정부 및 민간기관과는 구분되는 근거법에 기초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민생활안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바쳐진 재단에 법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재단법인의 형태가 적정할 것임(이종열 외, 2010: 29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법인의 경우 공기업 형태의 법인과 준정부 형태의 법인이 있으며, 준정부부문은 국가로부터 법에 의해 일정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음
 - 또한 특수법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기업에 기대 할 수 있는 능률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조직
- 안전문화진흥원의 조직체계는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 및 연구방향을 중심으로 구성함, 중점 사업 및 방향은 국민의 안전교육 훈련계획에 포함될 국민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국민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십형 시민교육프로그램 및 방안,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실행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개정방안 등의 제시가 될 것임
 - 이의 실천을 위한 사무기구별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진흥원 조직구조를 설계하면 다음 <그림 4-1>의 업무분장표와 같음(이종열 외, 2010: 291)

<그림 4-1> 2010년 연구보고서의 안전문화진흥원 운영사업 및 조직체계 제안



- 안전문화교육연구 분야의 확충을 통해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 활용방안을 개발토록 함, 또한 안전문화 향상 프로그램 및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문화 교육개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중앙부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 안전 분야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안전정책 수립을 통한 지원 참모조직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함

<표 4-1> 2010년 연구보고서의 안전문화진흥원 조직도(안)



출처: 이종열 외, 2010: 293.

○ 안전문화진흥원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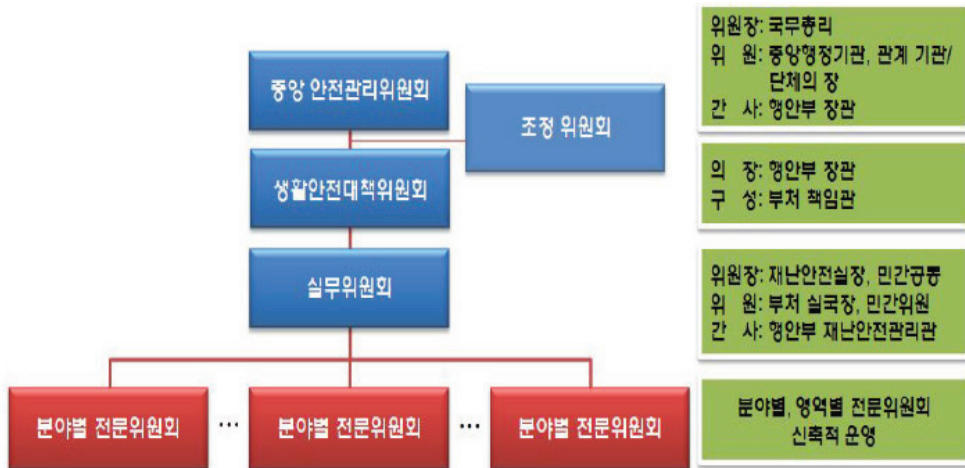
- 가칭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안전문화진흥원 추진기획단을 구성함,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추진기획단은 안전문화정책의 소통·합의 창구 역할로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신뢰 및 공식성을 전제로 재단의 사업방식, 역할 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실무준비 기획단을 조직하여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수행함

3. 2012년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체 설립에 관한 연구의 제안

○ 설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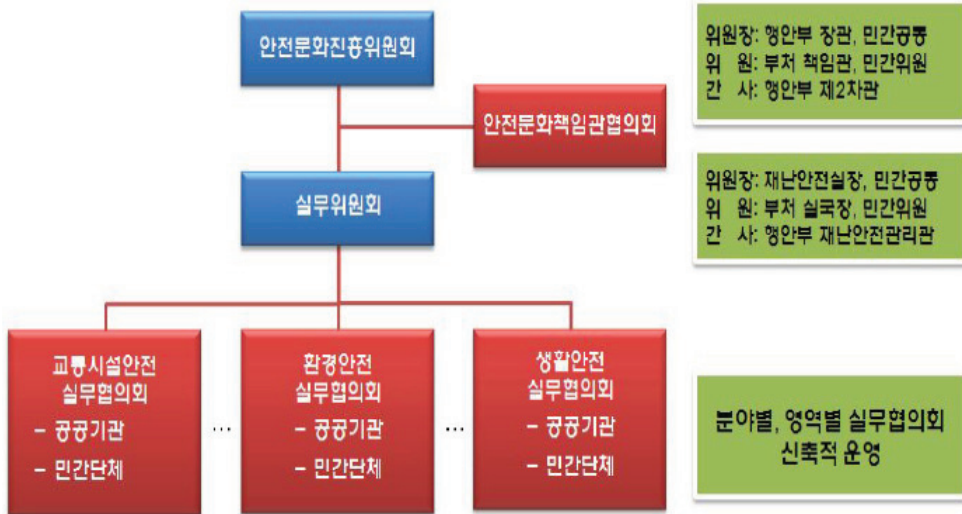
- 제1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의 범주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즉,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산하의 생활안전대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문화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방안(김근영, 2012: 158 이하)

<그림 4-2> 2012년 보고서의 정부위원회 산하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설치(안)



- 제2안은 제1안에서 모든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즉,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유도
- 제3안은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안전문화 진흥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것임. 위원회의 소속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로 함. 주된 역할은 안전문화 관련 부처 간 상호 협력적 정책 추진을 촉진하며, 안전문화 시행계획을 검토

<그림 4-3> 2012년 보고서의 국무총리 직속 ‘안전문화 진흥위원회’ 설치(안)



- 일본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사례처럼 상시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정립하고, 정부는 각 부처를 통한 소관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가칭)안전문화 진흥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안전문화 정책 총괄기능의 강화(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심의, 1년 단위 시행계획 심의, 부처 간 중복 정책 등의 합리적 조율), 안전문화 유관 영역 간 정책의 공조(안전교육, 훈련,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정책 홍보 영역과의 수평적 정책협력 등),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문화 진흥사업 투자의 효율화 제고 그리고 안전문화 관련 주요 시책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함

제2절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

1. 2014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본 설립 필요성

○ 설립 필요성

- 미국의 경우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 및 위기관리를 위한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해 안전문화의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주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기능들이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산재되어 있음(이종열 외, 2010: 223)
- 따라서 안전문화 확산과 의식고취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핵심추진체계의 부재로 갈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핵심 추진주체가 필요함
- 안전문화 육성의 활성화와 국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함,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국민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에 대한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함

○ 2014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당위적 필요성

- 안전행정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2013년) 개정하면서 동법 제66조의2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음(본조 신설 2013년 8월 6일-2014년 2월부터 발효)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문화활동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

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등임

- 따라서 이러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 안전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내용

- 안전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내용에는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와 국가 및 국민의 책무, 추진주체와 체계,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재원확보, 안전문화 활동 증진의 영역,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육성지원, 계층별 안전 확보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종합해 보면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은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추진되는 추진체계와 전혀 다른 형태로 구성할 시에 이에 관한 논의가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처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상설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법령의 당위성이나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할 시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설립형태

- 비영리 법인은 국가가 경영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의하여 직접 경영할 것인가 또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가는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설립 특징을 지니고 있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근거 법률인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 법인으로서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의 설립이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형태임
 - 따라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은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생활안전 관리기반의 조성과 안전문화 선진화의 구축, 그리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활동·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구와 다른 차별성을 지닌 비영리 공공 법인격의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이 요구됨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유

-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성립이 되는 일반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가 일반적임. 비영리 법인은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모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성립함,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래 목적의 반하지 않는 범위내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의도적·계획적 이윤추구를 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음, 또한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 지출을 하며,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근간으로 함
-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첫째,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 추구를 하지 않으며, 둘째,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으며, 셋째,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지출을 하며, 넷째,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하고, 다섯째,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 세, 증여세가 면제되고 수익사업에 대하여 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받는 등의 특징을 지님
- 사단법인의 경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의 집

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법인이며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 요건을 구비하여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짐. 사단법인은 인적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 할 수 있음

<표 4-2> 비영리 재단법인과 영리 사단법인의 차이

구별요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소유 주체	민법(개별법, 특별법)상 법인이 주체	사원(총회) 등 최고 의사결정체
이익배당	× 법인에 귀속	○ 사원, 주주, 출자자
목적사업	비영리사업	영리사업
수익사업범위	성립목적에 위배되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에 의거	제한없음
잔여재산처분	×	○
정부지원(보조금 등)	○ 법적 근거에 따라	×
세제지원	○	×

- 특수법인: 특별법으로 성립된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형태의 하나인 특수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등과 같이 일반법이 아닌 특정한 개별법 및 특별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 특수법인 중 ‘특정한 개별법’ 그중에서도 ‘육성법’ ‘촉진법’상의 법인
 -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은 ① 개별 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② 육성법, 촉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됨
 - ①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구)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구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재단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조합이 있음

- 그리고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행정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은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등 그 명칭이 다양함
- ② 육성법 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②-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구)인삼연초연구소가 있음. ②-2. 기타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는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있음. ②-3. 촉진법, 진흥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등이 있음
- ③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수가 있음

- 특수법인 중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함
 - 특수법인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경우와 정부와 사인(私人)이 공동 출자한 법인의 경우가 있고, 특수법인의 설립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므로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은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됨
 -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더욱 필요함
 -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입법취지, 목적, 예산의 지원여부, 업무의 공공성(위탁 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특수법인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의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법정되며 기관 및 구성원에 관하여 국가가 참가하고 해산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조세면제의 특전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특수법인은 민법상의 재단, 사단과는 달리 쟁송형태가 행정소송이고, 징수절차로 민사소송법에 직접 규율되지 않으며, 공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됨
 - 특수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은 보통 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인사,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제약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기 위함임
 - 현대사회의 복리행정의 확대에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급부행정으로서의 국가기업의 증대, 지역재개발사업의 실시 등의 요구가 특수법인

에 기대할 수 있는 능률적 경영의 요구와 합치되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제3절 | 안전문화활동 추진 주체의 행·재정 지원 방안

1.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체계

- 재난안전기본법상 제71조 제4항에 대한 총괄기관 근거와 시행령상의 근거를 활성화함

<p>제79조(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p>	<p>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p>제79조의2(출연금의 지급·관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행정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79조의3, 제80조 및 제81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관련 소요비용 추계

- 사업비지원 근거 조항
 - 재난안전기본법상 제71조에 근거

<p>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p>	<p>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p> <p>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p>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안전행정부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그 총괄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u> <개정 2013.3.23, 2013.8.6></p> <p>⑤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2010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한 소요비용 추계
 -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함
 -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안전문화진흥원이 설립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13억 3,400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73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표 4-3> 원유철의원의 제정소요(안): 2011~2015년(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인건비	1,200	1,262	1,333	1,400	1,470	6,665
경상경비	134	138	142	146	150	710
합 계	1,334	1,400	1,475	1,546	1,620	7,3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례
 - 국가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를 연구하여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비용 추정
 -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1) 관련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며, (2) 사업영역이 공공 및 민간 영역을 포함한 국가전체이며, (3)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 중 정보문화 진흥사업은 안전문화진흥원의 안전문화 진흥과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때문임(이종열 외, 2010)
- 설립비용의 추정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무부처(행정안전부)로부터 인건비 전액과 경상운영비의 50% 정도를 출연금으로 제공받음. 본 추계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안전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구성한다고 가정함
 - 진흥원의 인력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에 비례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정보문화진흥과 안전문화 진흥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출연금의 규모는 정보문화진흥관련 출연금의 규모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사업비에서 정보문화진흥과 관련된 세부사업 규모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적용하여 구함

3. 운영체계 구성(안)

○ 기본방향

- 분산된 안전문화 기능 사업의 통합체 구성 필요: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수준의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타부처 산하의 재난 및 안전유관기관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배치 부분을 담당·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특히 부처간 산재되어 있는 안전문화 업무의 통합 조정을 위한 기구로 행정안전부에 (가칭)안전문화문위원회를 두어 향후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과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사업운영체의 독립성 보장으로 사업활동성 보장

- 현재 안전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독립 기관화된 국가 차원의 안전문화를 추구하는 법정 전담기구로서 사업성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의식 연구, 연수, 정보제공, 기술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전관련 공무원 및 일반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 이러한 독립기관을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육성 발전과 안전문화서비스의 향상을 위

한 지원 사업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안전문화 향상에 이바지함

- 정책사업 집행기능과 정책개발 지원 기능의 균형
 - 연구원과 행정직(전문원)의 균형 있는 조직 구성으로 정책개발 지원 기능과 정책사업의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킴
 -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간 공동협력 방안 도출하고, 안전문화 구축과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과의 투자 중복 방지를 도모함, 이러한 안전문화 정책사업 집행기능과 지원 기능의 균형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보급을 위한 대 국민홍보 및 교육을 담당토록 함
- 시민의 안전문화 학습기회 확충과 서비스의 질 향상
 - 안전문화 연구와 실천 전문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기관의 전문화를 추진함. 행정의 핵심에는 시민의 만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안전문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일반시민의 안전문화학습 기회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업무 추진을 통해 안전의식의 제고와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및 안전문화 선진화 구축
 - 대형 재난 및 안전사고의 증가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필요
 - 초등학교에서의 재난교육을 정규교과 과정화 하고, 재난안전 체험시설의 대폭확충 필요
 -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통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국내 재난안전체험 시설 및 모든 안전문화활동을 총괄 및 체계적으로 지원
- 네트워크 체계 마련과 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기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연

- 계 강화에 기여하고 상호 지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수준의 안전문화 추진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함.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총체적인 면에서 안전문화 진흥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교육 및 업무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재난 안전 업무와 지원 기능 부처별 경계 넘기를 통해 전 부처의 안전문화 전문성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과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수준의 주체 간 역할 분담을 적정화하도록 함. 또한 전 국가적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사업 발굴, 컨설팅 등 전문적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함

제5장

결론



제 5 장

결 론

-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검토사항
 -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유형을 새롭게 체계화하면서, 조직 및 인사운영체계 등의 공정성, 공공기관 설립운영의 정당성, 필요성 등의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의 남설을 방지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줄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그리하여 새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운영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재원과 공공사업의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설치 및 운영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음
-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필요성
 - 이에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재난안전기본법 제8장에서 안전문화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추진을 담당할 독자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시설 및 인력의 부족을 보충할 기관 필요
 - 현재 재난방재 및 안전 분야의 종사인력은 총 16만명으로 중앙 2,400, 지방자치단체 6,000, 재난관리책임기관 15만명 수준으로 평가함.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단기적 인사운영방식으로 업무 노하우 등을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축적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중점적 업무를 수행할 전문요원 양성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사업 수행기관이 필요한 상황임(나채준, 2013: 52)

- 현 상황에서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자면 다음과 같음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현황을 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재난안전관리(사이버교육)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분야에서의 재난위기관리 과정을 국토교통부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함
 - 환경부는 화학사고대응과정으로 주요 유관기관(환경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고 있음
 - 농수산식품부도 가축질병관리 등을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또 수산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선박안전 및 유도선안전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식품사고, 생물테러 등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국의 공무원, 보건소 인력과 의사 등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시 소방방재연수원에서 재난관리와 소방 전문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안전소방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평가할 기관 필요
-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는 명확한 의사소통과 책임성 인지를 통해서만이 적절한 정책결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재난관리는 종합적인 위기관리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서 주요재난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발생 가능한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예방과 재해경감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비용효과적인 고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함

- 이러한 총체적이고 경험적인 사례연구와 그에 필요한 대안마련을 위한 조사업무 등을 전담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시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선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집행적 성격의 공공기관 설립운영이 필요한 시점임
 - ‘안전협’은 아직 독자적인 사업체계나 독립적 재원확보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임
- 2014년 재난안전기본법 및 시행령상으로 본 안전문화진흥원의 역할
- 동법 시행령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이하 제73조의3부터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을 시민들에게 고취하고, 생활안전 및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안전문화진흥원을 예정하고 있음(시행령 제73조의4)
 - 또한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안전분야의 전문강사 양성, 안전교육의 활성화 등을 촉진시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대응하여 수습할 수 있는 사회총체적 접근방법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의 수집·관리(제73조의7), 안전지수의 조사·공표(제73조의8)를 통해서 국민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집행적 공공기관의 운영 체계화를 요청하고 있음
- 안전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의 실행촉진
- 안전문화진흥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에서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거법

를(동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의거해서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추진시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정부출연금의 지급(시행령 제79조의2)이 가능하고, 이를 위탁연구비로 사용하여 사용실적으로 주무부처장관과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규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따른 초기 5년간 출연금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들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교육, 연구, 조사, 홍보 등)들을 추진하고, 특히 정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사업무 등과 관련한 위탁사업비를 지원받아 초기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
- 안전문화진흥원의 독자적인 수입재원으로는 교육사업, 안전정보 활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문화진흥원의 조직운영체제와 인력관리 방안

- 이미 제4장에서 기존연구 결과를 검토했으므로 기본구조만 언급하고자 함
- 조직구성은 주요사업 분야가 4~5개로 구분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각 분야별 본부를 구성하고, 세부사업에 따른 팀제 또는 센터로 조직을 설치하면 될 것임
- 적정 인력규모는 안전문화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안전문화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양성 인력 등이 필요하고, ‘안문협’의 지역협의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인력임용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으로 각 5개 본부별 10명 기준으로 정규직 50여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시간제 임용제도를 활용함.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지원 예산규모도 고려한 인력운영체제 마련이 중요함

참고문헌

- 김근영(2012),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나채준(20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08
현안분석
- 소방방재정(2011),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지침”
- 이종열(2011), “안전지수 개발 및 안전문화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 행정안전부
- 어기구 외(2010), ”안전문화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http://oshri.kosha.or.kr/board>)
- 오장근(2009) 효문화진흥원 설치를 위한 소론 - 효문화진흥원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효학연구, 04/30/2009, Vol. 9, p. 83-107; 한국효학회
- 정준석(2008),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현황 및 역할에 대하여”, 한국공학교육학회(구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공학교육> 15권3호 (2008), pp.77-79
- 지우석 외(2013), 경기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5대 시책, 경기개발연구원 2013-65
정책과제
- 박광동(2012),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
구보고서 2012-11
- 안전행정부(2013), 시도 안문현 민간위원장 간담회(2013-11-04) 등 보도자료
_____, “안행부,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보고대회 가져”(2013-10-16)
_____, 심폐소생술 직장교육 실시(2013-08-13)
- 행정안전부 안전책임관 워크숍(CSO) 개최(10.2) 발표자료(2013-10-07)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 2013 안전행정백서, 2012 행정안전백서, 2011 행정안전백서, 2010 행정안전백서
경기도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
- http://fire.gyeonggi.kr/fire_dev/contents/contents.php?ctt_id=safetymain&mn_id=GM_MN_05
-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http://bangjae.busan.go.kr>)

부산시 재난네트워크 현황 (2012-02-26)

최근 10년간의 피해 복구현황 (2012-02.28)

우수사례(2011년)

http://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secu&menu=secu_14_04

SaFE School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전 생활 습관형성_각리초등학교

손상예방 프로그램 활용으로 안전한 학교_정자초등학교

장애아동을 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사회복지법인 늘사랑어린이집


함정 안전사고 예방활동_마산함

제2회 안전보건체험 페스티벌_천안시청

녹색어머니 연합회 조직 활성화(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_현대해상

Safe DTRO_대구도시철도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